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행정문화위원회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 번호	780
----------	-----

2018. 3. 13.(화)  
행정문화위원회

**1. 심사경과**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8년 3월 12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3월 13일

- 제3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**2. 제안 설명 요지**

(제안설명자 : 오진섭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지난 3월 12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고, 시군의 읍면동 명칭 변경 및 청주·청원 통합 등으로 시·군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
-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·군의원지역선거구를 재확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시·군의회 의원 정수 : 132명(1명 증가)

구분	계	청주	충주	제천	보은	옥천	영동	증평	진천	괴산	음성	단양
계	132	39	19	13	8	8	8	7	7	8	8	7
비례	16	4	2	2	1	1	1	1	1	1	1	1
지역	116	35	17	11	7	7	7	6	6	7	7	6

○ 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(별표 2)

- 읍면동 명칭변경 : 2개 지역선거구 2개 읍면동(제천)
- 청주·청원 통합에 따라 도의원 지역구 변경으로 청주시 시군의원 지역구 전면 재조정

※ 타 시군 선거구역은 변동사항 없음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호식)

- 위 개정조례안은 시군의 읍면동 명칭 변경 및 청주·청원 통합 등으로 시·군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,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시·군의원지역선거구를 재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청주를 제외한 타 시·군의원의 정수는 변동이 없으며, 청주는 통합되기 전 청주시, 청원군의 시·군의원은 38명(청주: 지역구 23명, 비례: 3명, 청원: 지역구 10명, 비례 2명)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39명(지역구 35명, 비례4명)으로 1명이 증가하였음.
- 통합 청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되는 선거구에서도 통합 전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역 특성이나 인구수에서 동이나 읍면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. 선거 이후에도 선거구별로 생활, 문화, 교통 등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선거구 확정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현재 선거구 확정에 대한 개정안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780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362회)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3월 1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8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3월 12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지난 3월 9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고, 시군의 읍면동 명칭 변경 및 청주·청원 통합 등으로 시·군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
-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·군의원지역선거구를 재획정

## 2. 주요내용

- 시·군의회의원 의원 정수 : 132명(1명 증가)

구분	계	청주	충주	제천	보은	옥천	영동	증평	진천	괴산	음성	단양
계	132	39	19	13	8	8	8	7	7	8	8	7
비례	16	4	2	2	1	1	1	1	1	1	1	1
지역	116	35	17	11	7	7	7	6	6	7	7	6

- 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(별표 2)
  - 읍면동 명칭변경 : 2개 지역선거구 2개 읍면동(제천)
  - 청주·청원 통합에 따라 도의원 지역구 변경으로 청주시 시군의원 지역구 전면 재조정 ※ 타 시군 선거구역은 변동사항 없음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같은 법 부칙 제5조3항에 따른”을 “같은 법 부칙 제4조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1]

시·군의회의 의원 정수

구 분 시군별	의원정수			비 고
	계	비례대표 의원정수	지역구 의원정수	
계	132	16	116	
청 주 시	39	4	35	
충 주 시	19	2	17	
제 천 시	13	2	11	
보 은 군	8	1	7	
옥 천 군	8	1	7	
영 동 군	8	1	7	
증 평 군	7	1	6	
진 천 군	7	1	6	
괴 산 군	8	1	7	
음 성 군	8	1	7	
단 양 군	7	1	6	

[별표 2]

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

구 분	지역구 명 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	비 고
충청북도	합계	116	46개 선거구	
청주시	소계	35	12개 선거구	
	청 주 시 “가”선거구	3	중암동, 성안동, 탑대성동, 금천동, 용담·명암·산성동	
	청 주 시 “나”선거구	3	영운동, 용암제1동, 용암제2동	
	청 주 시 “다”선거구	2	낭성면, 미원면, 가덕면, 남일면, 문의면	
	청 주 시 “라”선거구	3	사직제1동, 사직제2동, 모충동, 수곡제1동, 수곡제2동	
	청 주 시 “마”선거구	3	남이면, 현도면, 산남동, 분평동	
	청 주 시 “바”선거구	3	사창동, 성화·개신·죽림동	
	청 주 시 “사”선거구	3	복대제1동, 복대제2동, 봉명제1동	
	청 주 시 “아”선거구	3	강내면, 가경동, 강서제1동	
	청 주 시 “자”선거구	4	오송읍, 옥산면, 운천·신봉동, 봉명제2·송정동, 강서제2동	
	청 주 시 “차”선거구	3	우암동, 내덕제1동, 내덕제2동, 울량·사천동	
	청 주 시 “카”선거구	2	내수읍, 북이면, 오근장동	
	청 주 시 “타”선거구	3	오창읍	

구 분	지역구 명 칭	지역구 선출의원정수	선거구역	비 고
충주시	소계	17	7개 선거구	
	충주시 “가”선거구	2	신니면, 노은면, 양성면, 중앙탑면	
	충주시 “나”선거구	2	주덕읍, 살미면, 수안보면, 대소원면	
	충주시 “다”선거구	3	용산동, 지현동, 호암·직동, 달천동	
	충주시 “라”선거구	2	금가면, 동량면, 산척면, 엄정면, 소태면	
	충주시 “마”선거구	2	칠금·금릉동, 목행·용탄동	
	충주시 “바”선거구	2	성내·충인동, 문화동, 봉방동	
	충주시 “사”선거구	4	교현·안림동, 교현2동, 연수동	
제천시	소계	11	5개 선거구	
	제천시 “가”선거구	2	봉양읍, 백운면, 송학면	
	제천시 “나”선거구	2	의림지동, 청전동	
	제천시 “다”선거구	2	중앙동, 영서동, 용두동	
	제천시 “라”선거구	2	금성면, 청풍면, 수산면, 덕산면, 한수면, 화산동	
	제천시 “마”선거구	3	교동, 남현동, 신백동	

구 분	지역구 명 칭	지역구 선출의정수	선거구역	비 고
보은군	소계	7	3개 선거구	
	보은군 “가”선거구	2	보은읍	
	보은군 “나”선거구	2	속리산면, 장안면, 마로면, 탄부면	
	보은군 “다”선거구	3	삼승면, 수한면, 회남면, 회인면, 내북면, 산외면	
옥천군	소계	7	3개 선거구	
	옥천군 “가”선거구	3	옥천읍	
	옥천군 “나”선거구	2	동이면, 이원면, 군서면, 군북면	
	옥천군 “다”선거구	2	안남면, 안내면, 청성면, 청산면	
영동군	소계	7	3개 선거구	
	영동군 “가”선거구	3	영동읍, 양강면	
	영동군 “나”선거구	2	용산면, 용화면, 학산면, 양산면, 심천면	
	영동군 “다”선거구	2	황간면, 추풍령면, 매곡면, 상촌면	
증평군	소계	6	3개 선거구	
	증평군 “가”선거구	2	증평읍(창동리, 중동리, 교동리, 초중리, 대동리, 증평리, 신동리)	
	증평군 “나”선거구	2	증평읍(내성리, 증천리, 남하리, 용강리, 죽리, 덕상리, 남차리, 울리, 장동리)	
	증평군 “다”선거구	2	도안면(증평읍 연탄리, 송산리, 미암리, 사곡리 포함)	

구 분	지역구 명 칭	지역구 의수 지선출원정수	선거구역	비 고
진천군	소계	6	2개 선거구	
	진천군 “가”선거구	3	진천읍, 문백면, 백곡면	
	진천군 “나”선거구	3	덕산면, 초평면, 이월면, 광혜원면	
괴산군	소계	7	3개 선거구	
	괴산군 “가”선거구	3	괴산읍, 칠성면, 문광면, 소수면	
	괴산군 “나”선거구	2	감물면, 장연면, 연풍면, 불정면	
	괴산군 “다”선거구	2	청천면, 청안면, 사리면	
음성군	소계	7	3개 선거구	
	음성군 “가”선거구	3	음성읍, 소이면, 원남면, 맹동면	
	음성군 “나”선거구	2	금왕읍, 생극면, 감곡면	
	음성군 “다”선거구	2	대소면, 삼성면	
단양군	소계	6	2개 선거구	
	단양군 “가”선거구	3	단양읍, 적성면, 단성면, 대강면	
	단양군 “나”선거구	3	매포읍, 가곡면, 영춘면, 어상천면	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생략)	제1조 (현행과 같음)
제2조 (생략)	제2조 (현행과 같음)
제3조(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) 「공직선거법」 제26조 제2항, 같은 법 부칙 제5조3항에 따른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.	제3조(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) 「공직선거법」 제26조 제2항, 같은 법 부칙 제4조3항에 따른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.

# 관 련 법 규

## 【 공직선거법 】

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① 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·시·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.

②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.

③ 비례대표 자치구·시·군의의원정수는 100분의 10으로 한다.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.

## 제24조의3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)

①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선거구(이하 "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"라 한다)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·도에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와 시·도의회 및 시·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·시·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⑤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,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시·도의회가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⑧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26조(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) ①생략(시·도의원선거구획정 관련)**

②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,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,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·도 조례로 정한다

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·면·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.

④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4조(자치구·시·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) ①**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5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·시·군은 읍·면·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.

**제6조(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특례)**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자치구·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
## 【 공직선거관리규칙 】

제4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) ①법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1.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·시·군별 인구 비율과 읍·면·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·면·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.
  2.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(이하 "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"이라 한다)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, 지역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(이하 "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"이라 한다)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.
- ②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·시·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2조(자치구·시·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)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"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·시·군"이란 강원도 영월군, 충청북도 증평군, 경상남도 거창군을 말한다